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5. 7. 1.>

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 ☞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・센터)장
□□□□□

우체국
요금후납

고용보험 피보험자격
확인통지서 재중

수신자 :
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[ ]취득 [ ]상실 확인통지서(피보험자용)

①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(하수급인관리번호)		
② 사무조합번호		③ 사무조합명
피보험자 (청구인)	④ 성명	생년월일
	⑤ 주소 (전화번호:)	
사업장	⑥ 명칭	
	⑦ 소재지 (전화번호:)	
⑧ 자격취득 확인	[ ]취득(취득일 년 월 일)	[ ]취득사실 없음
⑨ 자격상실 확인	[ ]상실(상실일 년 월 일)	[ ]상실사실 없음
	[ ]상실사유:	
⑩ 피보험자 관리명세	고용보험 피보험기간	
	사업장명	
⑪ 확인사유	[ ]자격취득・상실신고 누락 [ ]피보험기간 정정	[ ]신고사항 변경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・제104조의7・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・제125조의3제5항・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・통지합니다.

※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(「고용보험법」 제40조, 제48조,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).

-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,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.
-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,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.
-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,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.

년 월 일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・센터)장 직인

심사청구 안내

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기 바랍니다.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우 주소 /홈페이지 주소
전화번호( ) FAX번호( ) /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

210㎜×279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